



보도시점 2026. 3. 16.(월) 조간 누리망방송 2026. 3. 15.(일) 09:00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실시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 도입'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전국 5개소(서울 2, 수원 2, 울산 1)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서울(영등포시장 교차로,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병영사거리), 수원(수원시청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

'보도 통행 단속장비'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도 혹은 교통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 구역 내의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 시범운영 장소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이륜차의 보도 통행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무인 단속장비 대수 급증 등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효과분석 후 그 결과와 함께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확대 보급할 예정이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책임자	총경	유동배 (02-3150-2052)
		담당자	경정	전영식 (02-3150-2505)



참고자료

이륜차 보도 통행 단속장비 개요

□ 단속장비 개요

< 보도 통행 단속장비 단속 원리 >



- ▶ (단속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중 보도
- ▶ (단속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중 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단속

※ 도로 외인 곳을 출입하는 경우의 보도 통행이 가능한 장소는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여 단속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앞 교차로
(서울)



울산 병영사거리
(울산)



수원시청앞 교차로
(경기남부)



수원 KCC앞 교차로
(경기남부)

※ 설치장소 선정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최근 3년간 사망·중상 교통사고건수, TAAS), 시도경찰청 발굴지점(민원발발지역 등) 중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와 인접·동일한 지점

□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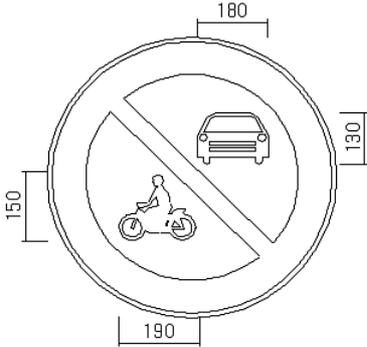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등	8	7	15
승용자동차등	7	6	
이륜자동차등	5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등	8	7	10
승용자동차등	7	6	
이륜자동차등	5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06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